

공동주택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안)
공동주택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	공동주택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정보통신공사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감리용역회사의 사업수행능력세부 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LH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이하 “감리용역”이라 한다)에 <u>한하여 적용되</u> 지구별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지침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서류제출기준) ① 감리용역 참여시에는 [붙임2]의 참여신청서(양식1)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 서류는 입찰광고일을 기준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출된 평가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찰 참여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한 일자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배점기준)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평가항목별 평가점수(가·감점 포함)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② 평가점수 계산은 최종평가점수 상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붙임1]에 의한다. 제5조(입찰참가자 선정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사전에 입찰참가자를 선정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감점 포함)를 합산하여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정보통신공사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감리용역회사(이하 “감리업체”라 한다)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LH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이하 “감리용역”이라 한다)의 <u>입찰에 참여한 감리업체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이하 “PQ”라 한다) 평가에 적용한다. 다만, 해당 감리용역 특성에 의해 입찰공고 및 과업내용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u> 제3조(서류제출기준) ① 감리용역 참여 시 [별표2]에 따라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 서류는 입찰광고일을 기준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4조(배점기준)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평가항목별 평가점수(가·감점 포함)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② <u>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u>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1]에 의한다. 제5조(입찰참가자격자 선정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사전에 입찰참가자격자를 선정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감점 포함)를 합산하여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한다.

현 행	개 정(안)
제6조(입찰참가자 선정제외 및 감점사항) 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접수마감일시 후에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참여감리원의 등급이 아래의 자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가. 정보통신공사 상주감리원의 등급이 정보통신공사법시행령 제10조 별표2 및 제8조의3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나. 참여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등급이 입찰공고시 제시되는 과업내용서상의 등급 미만인 경우와 감리원수가 부족한 경우 [붙임1]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대상 감리원의 타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검증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 설>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한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③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붙임1] 4. 평가 관련 유의사항 가. 나.의 경우) 없이 입찰에 불참하였을 경우에는 평가기준에 의해 감점됨을 유의하여 필히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입찰공고시 반영) 제7조(기 타) <신 설> - 입찰공고문 및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붙임1]의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따르고, 달리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공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시 등을 준용한다. - 감리용역 참여업체는 [붙임1]의 4. 평가 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서류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붙임2]를 참고하여 작성·제출한다. <신 설> <신 설>	제6조(입찰참가자격자 선정제외 및 감점사항) 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접수마감일시 후에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참여감리원의 등급이 아래의 자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가. 정보통신공사 상주감리원의 등급이 정보통신공사법시행령 제10조 별표2 및 제8조의3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나. 참여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등급이 입찰공고시 제시되는 과업내용서상의 등급 미만인 경우와 감리원수가 부족한 경우 [별표1]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대상 감리원의 타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검증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u>6. 입찰공고일 현재 감리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감리원으로 배치하지 않은 경우</u>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한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③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별표1] 4. 평가 관련 유의사항 1. 2.의 경우) 없이 입찰에 불참하였을 경우에는 평가기준에 의해 감점됨을 유의하여 필히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기 타) ① <u>평가기준일은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u> - 입찰공고문 및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별표1]의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따르고, 달리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공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시 등을 준용한다. - 감리용역 참여업체는 [별표1]의 4. 평가 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서류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별표2]를 참고하여 작성·제출한다. <u>책자화하여 제출한 서류와 파일로 제출한 것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책자화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한다.</u> <u>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u>

현 행	개 정(안)
<신 설> 제8조(제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지침 제1848호)에 따라 이 지침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20. 01. 21)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0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⑥ <u>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1월은 30일, 1년은 365일로 한다.</u> 제8조(제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지침 제1848호)에 따라 이 지침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9년 0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20. 01. 21)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0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06.25) <u>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u> <u>제2조 (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u>

차 례

[붙임 1] :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방법

I.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7
II. 세부 평가기준	8
III. 세부 평가방법	13
IV. 평가 관련 유의사항	20

[붙임 2] : 신청서 작성요령 및 양식

I. 신청서 제출서류	21
II.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21
III. 신청서 작성양식	22

양식 #1 : 감리용역 참여신청서	22
양식 #2 : 공동주택 정보통신 감리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서 표지	23
양식 #3 : 작업계획 및 기법 표지	24
양식 #4 : 자기평가서	25
양식 #5 : 참여감리원 평가·배치계획표	28
양식 #6 : 참여감리원 경력,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29
양식 #7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업무정지 지정기간	32
양식 #8 :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교육실적	33
양식 #9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34
양식 #10 : 업무충절도	35
양식 #11 : 교체빈도	36
양식 #12 : 가점 및 감점	37
양식 #13 : 상주감리원 각서	39
양식 #14 : 공사감리용역수행실적증명서	41

차 례

[별표1]: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방법

I.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8
II. 세부 평가기준	9
III. 세부 평가방법	14
IV. 평가 관련 유의사항	24

[별표2] : 신청서 작성요령

I. 신청서 제출서류	25
II.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25

<삭 제>

별지 제1호서식 : 공동주택 정보통신 감리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서 표지	26
별지 제2호서식 :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27
별지 제3호서식 : [작업계획 및 기법] 감리계획서 표지	28
별지 제4호서식 : 종합평가표	29
별지 제5호서식 : 참여감리원 평가·배치계획표	32
별지 제6호서식 : 참여감리원 경력,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33
별지 제7호서식 :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지정기간	36
별지 제8호서식 :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교육실적	37
별지 제9호서식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38
별지 제10호서식: 업무충절도	39
별지 제11호서식: 교체빈도	40
별지 제12호서식: 가점 및 감점	41
별지 제13호서식: 감리원 참여동의서	42
별지 제14호서식: 공사감리용역수행실적증명서	43

현행

평가항목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

1. 참여감리원

등급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당해용역 입찰공고 시 당해용역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감리원 등급 및 자격요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한 감리원 등급 및 자격요건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

경력 및 실적

분야

구분

직책

경력분야

점수

정보통신

상주

책임감리원 (1인)

정보통신

10

상주

보조감리원

정보통신

5

비상주

기술지원

고급이상

2

비상주

감리원(1인)

정보통신

8

계

50

절대평가

(50)

2. 유사용역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절대평가

(10)

3.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등

재정상태 건실도

절대평가

절대평가

(10)

7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투자실적

교육실적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10)

4

4

2

5. 업무중첩도

상주감리원

기술지원감리원

절대평가

절대평가

(10)

6

4

6. 교체빈도

감리업체

참여감리원

절대평가

절대평가

(5)

2.5

2.5

7. 작업계획 및 기법

- 5개 작성항목 평가

절대평가

(5)

계

100

8. 가점

기술자격

품질우수 통지서

절대평가

절대평가

(1)

(+0.6)

9.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입찰불참

품질미흡 통지서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5)

(-1)

(-0.6)

합계

개정(안)

평가항목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

1. 참여감리원

등급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해당용역 입찰공고 시 해당용역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감리원 등급 및 자격요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한 감리원 등급 및 자격요건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

경력 및 실적

분야

구분

직책

경력분야

점수

정보통신

상주

책임감리원 (1인)

정보통신

10

상주

보조감리원

정보통신

5

비상주

기술지원

고급이상

2

비상주

감리원(1인)

정보통신

8

계

50

절대평가

(50)

2. 유사용역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절대평가

(10)

3. 신용도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등

재정상태 건실도

절대평가

절대평가

(10)

7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기술개발투자실적

교육실적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10)

4

4

2

5. 업무중첩도

상주감리원

기술지원감리원

절대평가

절대평가

(10)

6

4

6. 교체빈도

감리업체

참여감리원

절대평가

절대평가

(5)

2.5

2.5

7. 작업계획 및 기법

- 평가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절대평가

(5)

계

100

8. 가점

기술자격

<삭 제>

절대평가

절대평가

(1)

<삭 제>

9.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입찰불참

품질미흡/우수 통지서(감점상쇄용)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5)

(-1)

(-3)

합계

현 행

II. 세부 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 요소	세 부 내 용	배점	평가 방법	비 고																		
1.참여 감리원 [50점]	[상주] 책임 감리원 (25점)	□ 정보통신분야경력 ○ 정보통신분야 근무경력을 다음과 같이 평가 ※ 단 기술지원 공사감리경력에는 20%만 인정(최대 9개 현장) <table><tr><td colspan="6">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td></tr><tr><td>구분</td><td>10년이상</td><td>10년미만 8년이상</td><td>8년미만 6년이상</td><td>6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td></tr><tr><td>점수</td><td>10</td><td>9</td><td>8</td><td>7</td><td>6</td></tr></table>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구분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수	10	9	8	7	6	10	절대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구분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수	10	9	8	7	6																		
		□ 정보통신감리분야경력 ○ 공고 또는 과업내용서상에 제시된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공사감독·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 ※ 단 기술지원 공사감리경력에는 20%만 인정(최대 9개 현장) <신 설> <table><tr><td>구 분</td><td>5년이상</td><td>5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 3년이상</td><td>3년미만</td></tr><tr><td>점수</td><td>15</td><td>14</td><td>13</td><td>12</td></tr></table>	구 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점수	15	14	13	12	15	절대									
구 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점수	15	14	13	12																			
	[상주] 보조 감리원 (15점)	※ 보조감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감리원의 점수를 합하여 감리원수 만큼 나누어 평가한다. 다만,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명을 제외한 인원은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정보통신분야경력 ○ 정보통신분야 근무경력을 다음과 같이 평가 ※ 단 기술지원 공사감리경력에는 20%만 인정(최대 9개 현장) <table><tr><td colspan="6">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td></tr><tr><td>구분</td><td>5년이상</td><td>5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 3년이상</td><td>3년미만 2년이상</td><td>2년미만</td></tr><tr><td>점수</td><td>5</td><td>4.5</td><td>4</td><td>3.5</td><td>3</td></tr></table>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구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점수	5	4.5	4	3.5	3	5	절대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구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점수	5	4.5	4	3.5	3																		
		□ 정보통신감리분야경력 ○ 공고 또는 과업내용서상에 제시된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공사감독·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 ※ 단 기술지원 공사감리경력에는 20%만 인정(최대 9개 현장) <신 설> <table><tr><td>구 분</td><td>2년이상</td><td>2년미만 1년이상</td><td>1년미만</td></tr><tr><td>점수</td><td>10</td><td>9.5</td><td>9</td></tr></table>	구 분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점수	10	9.5	9	10	절대											
구 분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점수	10	9.5	9																				

개 정(안)

II. 세부 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 요소	세 부 내 용	배점	평가 방법	비 고																		
1.참여 감리원 [50점]	[상주] 책임 감리원 (25점)	□ 정보통신분야경력 ○ 정보통신분야 근무경력을 다음과 같이 평가 <u><삭 제></u> <table><tr><td colspan="6">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td></tr><tr><td>구분</td><td>10년이상</td><td>10년미만 8년이상</td><td>8년미만 6년이상</td><td>6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td></tr><tr><td>점수</td><td>10</td><td>9</td><td>8</td><td>7</td><td>6</td></tr></table>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구분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수	10	9	8	7	6	10	절대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구분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수	10	9	8	7	6																		
	[상주] 보조 감리원 (15점)	□ 정보통신감리분야경력 ○ 공고 또는 과업내용서상에 제시된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공사감독·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 <u><삭 제></u> <table><tr><td colspan="5"><u>공사감독·공사감리</u></td></tr><tr><td>구 분</td><td>5년이상</td><td>5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 3년이상</td><td>3년미만</td></tr><tr><td>점수</td><td>15</td><td>14</td><td>13</td><td>12</td></tr></table>	<u>공사감독·공사감리</u>					구 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점수	15	14	13	12	15	절대				
<u>공사감독·공사감리</u>																							
구 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점수	15	14	13	12																			
	[상주] 보조 감리원 (15점)	* 보조감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감리원의 점수를 합하여 감리원수 만큼 나누어 평가한다. 다만,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명을 제외한 인원은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정보통신분야경력 ○ 정보통신분야 근무경력을 다음과 같이 평가 <u><삭 제></u> <table><tr><td colspan="6">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td></tr><tr><td>구분</td><td>5년이상</td><td>5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 3년이상</td><td>3년미만 2년이상</td><td>2년미만</td></tr><tr><td>점수</td><td>5</td><td>4.5</td><td>4</td><td>3.5</td><td>3</td></tr></table>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구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점수	5	4.5	4	3.5	3	5	절대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구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점수	5	4.5	4	3.5	3																		
		□ 정보통신감리분야경력 ○ 공고 또는 과업내용서상에 제시된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공사감독·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 <u><삭 제></u> <table><tr><td colspan="4"><u>공사감독·공사감리</u></td></tr><tr><td>구 분</td><td>2년이상</td><td>2년미만 1년이상</td><td>1년미만</td></tr><tr><td>점수</td><td>10</td><td>9.5</td><td>9</td></tr></table>	<u>공사감독·공사감리</u>				구 분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점수	10	9.5	9	10	절대							
<u>공사감독·공사감리</u>																							
구 분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점수	10	9.5	9																				

현행										개정(안)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평가방법	비고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평가방법	비고			
3.신용도 [10점]	계						10			3.신용도 [10점]	계						10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등 (7점)	1)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4	절대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등 (7점)	1) 감리업체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등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4	절대				
		2)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3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1					절대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1	절대	
- 당해 감리업체의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해당 감리업체의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구분						100%이상	100%미만	75%미만	50%미만	25%미만	구분						100%이상	100%미만	75%미만	50%미만	25%미만	
점수						1.0	0.85	0.70	0.55	0.4	점수						1.0	0.85	0.70	0.55	0.4	
재정상태 건설도 (3점)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도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2	절대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도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2	절대						
	- 당해 감리업체의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해당 감리업체의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구분						100%이상	100%미만	75%미만	50%미만	25%미만	구분						100%이상	100%미만	75%미만	50%미만	25%미만
	점수						2.0	1.7	1.4	1.1	0.8	점수						2.0	1.7	1.4	1.1	0.8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계						10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계						10					
	□ 개발실적 1) 정보통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정보통신 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점 -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4	절대				□ 개발실적 1) 정보통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정보통신 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점 -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4	절대			
구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구분									5년이하
특허						100%	80%	60%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실용신안						100%	80%	-					
신기술						100%	80%	-	신기술						100%	80%	-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현행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평가방법

비고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구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수

4

3.5

3

2.5

2

교육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 정보통신감리원 : 정보통신공사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정보통신 감리원교육 - 4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Σ교육이수인원/Σ평가대상인원수)×2점

-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Σ교육이수인원/Σ평가대상인원수)×1점

4

절대

5.업무
충절도
[10점]

상주감리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기술지원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당해용역 평가대상에서 제외

구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수

4

2

※ 입찰공고일 현재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감리원이 당해용역 배치예정일 이전에 기존 용역의 배치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발주청 또는 감리원 지정권자의 확인서류 제출시 중복배치로 보지 아니한다.

6

절대

기술지원감리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다른 공사현장에 기술지원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구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수

4

3

2

1

0

※ 업무충절도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4

절대

6.교체빈도
[5점]

감리업체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

교체빈도율 (%)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점수

2.5

2.0

1.5

0

참여감리원

○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2.5

절대

2.5

절대

개정(안)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평가방법

비고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기술개발투자실적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정보통신 및 정보시스템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구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수

4

3.5

3

2.5

2

교육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 정보통신감리원 : 정보통신공사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정보통신 감리원교육 - 4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Σ교육이수인원/Σ평가대상인원수)×2점

-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Σ교육이수인원/Σ평가대상인원수)×1점

4

절대

5.업무
충절도
[10점]

상주감리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기술지원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해당용역 평가대상에서 제외

구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수

4

2

※ 입찰공고일 현재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감리원이 해당용역 배치예정일 이전에 기존 용역의 배치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발주청 또는 감리원 지정권자의 확인서류 제출시 중복배치로 보지 아니한다.

6

절대

기술지원감리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다른 공사현장에 기술지원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구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수

4

3

2

1

0

※ 업무충절도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4

절대

6.교체빈도
[5점]

감리업체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

교체빈도율 (%)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점수

2.5

2.0

1.5

0

참여감리원

○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2.5

절대

2.5

절대

현행					개정(안)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평가방법	비고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평가방법	비고
7.작업 계획 및 기법 [5점]	계	5			7.작업 계획 및 기법 [5점]	계	5		
	○ 공사시행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5	절대	○ 공사시행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감리계획서 작성·제출		5	절대		
	○ 당해 공사감리용역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			○ 해당 공사감리용역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해당 공사에 적합한 감리계획서 작성·제출					
	정상 작성 및 제출			작성항목(5개)누락 또는 작성분량(15p) 위반				미제출	정상 작성 및 제출
5점	3점	0점	5점	3점	0점				
8. 가점 [1.9점]	☐ 기술자격 ○ 책임감리원이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1	절대		8. 가점 [1점]	☐ 기술자격 ○ 책임감리원이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1	절대	
	☐ LH발급 품질우수통지서 발급횟수 ○ 발급횟수는 입찰공고일 현재 1년 이내의 업체, 기술자 누계횟수 - 1회 : 0.3점 가점, 2회 : 0.6점 가점, 3회 이상 : 0.9점 가점 ※ 단, 품질우수통지서는 품질미흡통지서로 인한 감점을 상쇄하는 용도로만 적용	0.9	절대	<삭제>		0.9	절대		
9. 감점 [-6.9점]	☐ 부패행위관련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당해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정보통신공사법령 등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감리원과 부패행위 당시 그 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는 감점(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의 감점 처분 대상일은 감리원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가금액)의 3%초과 또는 10억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가금액)의 1%초과 또는 3억 초과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가금액)의 1%이하 또는 3억 이하 : 1점 감점 * 부패행위란 감리원이 책임(시공, 검측)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5	절대	9. 감점 [-9점]	☐ 부패행위관련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정보통신공사법령 등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감리원과 부패행위 당시 그 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는 감점(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의 감점 처분 대상일은 감리원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가금액)의 3%초과 또는 10억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가금액)의 1%초과 또는 3억 초과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가금액)의 1%이하 또는 3억 이하 : 1점 감점 * 부패행위란 감리원이 책임(시공, 검측)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5	절대		
	☐ 입찰불참 ○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찰에 불참한 경우 입찰일로부터 1년간 당해용역과 동일한 용역에 입찰참여시 감점 적용 - 1회 불참한 자 : 0.5점 감점, 2회이상 불참한 자 : 1점 감점				-1				절대
	☐ LH발급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횟수 ○ 발급횟수는 입찰공고일 현재 1년 이내의 업체, 기술자 누계횟수 - 1회 : 0.3점 감점, 2회 : 0.6점 감점, 3회 이상 : 0.9점 감점	-0.9	절대		☐ LH발급 품질미흡통지서 또는 품질우수통지서 ○ LH에서 발급하는 품질 미흡(우수)통지서에 따라 감점을 부여 또는 상쇄 <삭제>	-3	절대		

현 행	개 정(안)
Ⅲ. 세부 평가방법 1. 참여감리원 (1) 경 력 참여감리원 경력은 동일한 기간 내에 여러 용역이 중복될 경우에는 중복해서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정보통신 감리원 경력중 기술지원감리원의 경력에 대해서는 중복기간을 인정하며 그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정보통신분야 경력 1) 해당분야 경력은 정보통신분야에서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한다. * 공사감독은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 경력만을 인정 2) 기술지원감리원의 경력은 중복해서 경력기간을 인정하되 공사감리업무 기간의 20%로 하며, 감리 현장 최대 9개소 까지 산정 (나) 정보통신 감리분야 경력 1) 정보통신 감리분야 경력이라 함은 담당업무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하며 경력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경력년수를 100% 인정하는 경력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8호서식의 주거용 건축물(코드번호 311~315까지)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 ②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각 호의 자의 소속직원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8호서식의 주거용 건축물(코드번호 311~315까지)에 대한 공사감독으로 기재된 실적 나) 경력년수를 60% 인정하는 경력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8호서식의 비주거용 건축물(코드번호 320~371까지)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 ②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각 호의 자의 소속직원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8호서식의 비주거용 건축물(코드번호 320~371까지)에 대한 공사감독으로 기재된 실적 2) 기술지원감리원의 경력은 중복해서 경력기간을 인정하되 위 경력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하며, 감리 현장 최대 9개소 까지 산정한다	Ⅲ. 세부 평가방법 1. 참여감리원 (1) 경 력 참여감리원 경력은 동일한 기간 내에 여러 용역이 중복될 경우에는 중복해서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정보통신 감리원 경력중 기술지원감리원의 경력에 대해서는 중복기간을 인정하며 그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정보통신분야 경력 1) 해당분야 경력은 정보통신분야에서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한다. * 공사감독은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 경력만을 인정 2) 기술지원감리원의 경력은 중복해서 경력기간을 인정하되 공사감리업무 기간의 20%로 하며, 감리 현장 동일 기간 내 최대 5개소까지 산정한다. (나) 정보통신 감리분야 경력 1) 정보통신 감리분야 경력이라 함은 담당업무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하며, 구분이 어려울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용승인서, 건축물대장, 완료필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경력년수를 100% 인정하는 경력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8호서식의 주거용 건축물(코드번호 311~315까지)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 ②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각 호의 자의 소속직원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8호서식의 주거용 건축물(코드번호 311~315까지)에 대한 공사감독으로 기재된 실적 나) 경력년수를 60% 인정하는 경력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8호서식의 비주거용 건축물(코드번호 320~371까지)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 ②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소속직원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8호서식의 비주거용 건축물(코드번호 320~371까지)에 대한 공사감독으로 기재된 실적 2) 기술지원감리원의 경력은 중복해서 경력기간을 인정하되 위 경력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하며, 감리 현장 동일 기간 내 최대 5개소까지 산정한다.

현행

건축물시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8호서식 (3)세부공종별(종합) 부호코드]

311: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312:저층아파트(5층이하)

313:고층아파트(6~15층이하)

314:초고층아파트(16층이상)

315:주거·사무실겸용건물

320:상가·백화점·쇼핑센터

321:사무실빌딩

322:오피스텔

325:인텔리전트빌딩

330:호텔·숙박시설

340:관공서건물(11층이하)

341:관공서건물(12층이상)

342:학교

343:병원

350:전통양식건축

351:교회·사찰등 종교용건물

352:기타 문화재, 유적건물

360:경기장·운동장

361:전시(展示)시설

370:창고,차고,터미널 건물

371:공장, 작업장용건물

개정(안)

건축물시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8호서식 (3)세부공종별(종합) 부호코드]

311: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312:저층아파트(5층이하)

313:고층아파트(6~15층이하)

314:초고층아파트(16층이상)

315:주거·사무실겸용건물

320:상가·백화점·쇼핑센터

321:사무실빌딩

322:오피스텔

325:인텔리전트빌딩

330:호텔·숙박시설

340:관공서건물(11층이하)

341:관공서건물(12층이상)

342:학교

343:병원

350:전통양식건축

351:교회·사찰등 종교용건물

352:기타 문화재, 유적건물

360:경기장·운동장

361:전시(展示)시설

370:창고,차고,터미널 건물

371:공장, 작업장용건물

(2) 첨부서류

(가) 참여감리원 평가·배치계획표(양식5)

(나) 참여감리원 경력(양식6-1)

(다) 정보통신분야 및 감리분야 경력 확인서류

분 야

발행기관

제출서류

비고

정보통신분야
(감리포함)

한국정보통신
공사협회

기술자경력확인서,
감리원경력확인서,
감리원자격증 사본,
기술자격증
사본(필요시)

입찰공고일 이후발급된 원본서류 제출
※ 동시 다수건 PQ서류 제출시 원본
(1부)을 포함한 사본(원본대조필인)
제출 가능

<신 설>

o 참여감리원 경력은 감리원별 상기 발행기관(관련 협회)에서 발급·등재된 경력으로 인정. 다만, 상기 발행기관에서 확인 불가능시 발주 기관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해당분야 경력 인정

o 경력확인서에 감리경력에 대한 근무형태(상주, 비상주)가 표기 되어야함

o 협회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위치(현장명, 본사 등)가 표기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현재 타용역에 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는 각서제출(양식 13-1 : 상주감리원각서, 양식 13-2 : 기술지원감리원각서,)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 평가방법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건축물시설 정보통신공사와 관련된 감리용역의 누계실적(단, 1건 기준 실적인정금액액이 2천2백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인 용역에 한한다.)

(나) 건축물시설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실적 산정은 유사감리용역은 100% 인정하고, 기타감리용역은 60% 인정한다.

1) 유사감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8호서식의 주거용 건축물(코드번호 311~315까지)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2) 첨부서류

(가) 참여감리원 평가·배치계획표(별지 제5호서식)

(나) 참여감리원 경력(별지 제6-1호서식)

(다) 정보통신분야 및 감리분야 경력 확인서류

분 야

발행기관

제출서류

비고

정보통신분야
(감리포함)

한국정보통신
공사협회

기술자경력확인서, 감리원경력확인서,
감리원자격증 사본,
기술자격증 사본(필요시)

<삭 제>

o 참여감리원은 입찰공고일 기준 PQ참여 감리업체에 소속된 감리원이어야 하며, 증명서류(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확인서 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증명서)로 확인

o 참여감리원 경력은 감리원별 상기 발행기관(관련 협회)에서 발급·등재된 경력만 인정

<삭 제>

o 경력확인서에 감리경력에 대한 근무형태(상주, 비상주)가 표기되어야 함

o <삭 제>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 평가방법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한 2.2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의 건축물시설 정보통신 감리용역이거나 현재 수행중인 용역 중 기성누계금액이 2.2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인 스마트도시 건설 관련 감리용역 실적의 합계에 따라 평가

(나) 건축물시설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실적 산정은 유사감리용역은 100% 인정하고, 기타감리용역은 60% 인정한다.

1) 유사감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8호서식의 주거용 건축물(코드번호 311~315까지)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현 행	개 정(안)
2) 기타감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8호서식의 비주거용 건축물(코드번호 320~371까지)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신 설> (다) 공사가 진행중인 용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일 이전까지 받은 기성금액 누계실적으로 인정한다. <신 설> (2) 참여업체가 중소기업(대표사 제외) 중 신생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배점의 만점으로 평가함 -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함 - 신생기업 이란, 참여하고자하는 용역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우리공사의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계약한 실적이 없는 업체임(다만, 유사용역 계약 실적만 해당하며 발주하는 용역의 성격, 규모, 유형 등에 따라 조정시행할 수 있으며 입찰 공고 시 별도 명기 할 수 있음). (신생기업 자격 유효기간 : 상기 자격으로 참여하여 최초 계약일로부터 3년간) - 증빙서류 : 해당 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분) (3) 첨부서류 (가)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양식6-2) (나) 관련 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감리용역 수행실적증명서(양식14) (다)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감리용역 수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한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당해 감리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2) 기타감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8호서식의 비주거용 건축물(코드번호 320~371까지)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계산방법 ○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수행한 실적 중 준공한 용역의 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전체 공사기간} × 공사감리비 예시) 입찰공고일이 '20.09.20일인 경우, 이행비율 100%인 준공된 공사감리용역의 감리기간이 '16.05.20~'18.10.21이고, 감리비가 500,000천원일 때 → 3년간의 기준일 : '17.09.22~'20.09.20 * 시작일(A-365×3+1) ~ 종료일(A) → 총감리용역 기간 : [('18.10.21)-('16.05.20)+1] = 885일 → 감리수행기간 : [('18.10.21)-('17.09.22)+1] = 395일 ⇒ 평가감리비 : 395일/885일 × 500,000천원 ≒ 223,163천원(소수점 이하 절사) ○ 진행중인 용역의 감리수행기간의 종료일은 입찰공고일임 ※ 감리비는 전체용역에 대한 감리비이며, 평가감리비는 최근 3년간 수행기간 및 이행비율(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감리비임 (다) 공사가 진행중인 용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일 이전까지 받은 기성금액 누계실적으로 인정한다. <u>(라) 전기·소방 등 타 분야 공사감리용역과 통합발주의 경우에는 타분야 용역을 제외한 (나)항의 해당분야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발급받거나 실적증명서상의 실적금액이 확실하게 구분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u> (2)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감리업체가 중소기업(대표사 제외) 중 신생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배점의 만점으로 평가함 -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함 - 신생기업 이란, 참여하고자하는 용역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우리공사의 공동주택 정보통신 감리용역(건설사업관리용역 분담이행사 포함)에 계약한 실적이 없는 업체임(다만, 유사용역 계약 실적만 해당하며 발주하는 용역의 성격, 규모, 유형 등에 따라 조정시행할 수 있으며 입찰 공고 시 별도 명기 할 수 있음). (신생기업 자격 유효기간 : 상기 자격으로 참여하여 최초 계약일로부터 3년간) - 증빙서류 : 해당 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분) (3) 첨부서류 (가)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별지 제6호서식) (나) 관련 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감리용역 수행실적증명서(별지 제14호서식) (다)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감리용역 수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한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해당 감리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현 행	개 정(안)
3. 신 용 도 (1)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기술자격정지 (가) 감리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감리업체가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과징금부과 처분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적용. (나) 참여감리원 참여감리원이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 (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2) 재정상태건실도 <신 설> (가)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하며, 신규·합병·사업양수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2) 합병·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나) 재정상태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로 확인한다. (다) 참여업체가 중소기업(대표사 제외) 중 신생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배점의 만점으로 평가함 -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함 - 신생기업 이란, 참여하고자하는 용역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우리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계약한 실적이 없는 업체임(다만, 유사용역 계약 실적만 해당하며 발주하는 용역의 성격, 규모, 유형 등에 따라 조정시행할 수 있으며 입찰 공고 시 별도 명기 할 수 있음). (신생기업 자격 유효기간 : 상기 자격으로 참여하여 최초 계약일로부터 3년간) - 증빙서류 : 해당 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분) (3) 첨부서류 (가)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기술자격정지 지정기간 (양식7) (나)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제재현황 및 부실벌점확인서 (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행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3. 신 용 도 (1) <u>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등</u> (가) 감리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감리업체가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u>영업정지(과징금부과 처분포함) 등을</u>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적용. (나) 참여감리원 참여감리원이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u>업무정지</u>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 (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2) 재정상태건실도 <u>재정상태 건실도 평가의 경우 평균비용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로 산정하며, 업체비용은 최근 연도의 회계결산 기준으로 작성된 비용을 평가에 적용한다.</u> (가)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하며, 신규·합병·사업양수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2) 합병·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나) 재정상태는 <u>해당 감리업체가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로 확인한다.</u> (다) <u>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감리업체가 중소기업(대표사 제외) 중 신생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배점의 만점으로 평가한다.</u> -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함 - 신생기업 이란, 참여하고자하는 용역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우리공사의 <u>공동주택 정보통신 감리용역(건설사업관리용역 분담이행사 포함)</u>에 계약한 실적이 없는 업체임(다만, 유사용역 계약 실적만 해당하며 발주하는 용역의 성격, 규모, 유형 등에 따라 조정시행할 수 있으며 입찰 공고 시 별도 명기 할 수 있음). (신생기업 자격 유효기간 : 상기 자격으로 참여하여 최초 계약일로부터 3년간) - 증빙서류 : 해당 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분) (3) 첨부서류 (가) <u>영업정지 및 업무정지</u> 지정기간(<u>별지 제7호서식</u>) (나) <u>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행 행정처분 사실확인서</u> (다) <u>재정상태 검토보고서,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공인회계사(세무사) 등록증 사본</u>

현행	개정(안)						
4. 기술 개발실적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기술개발실적이라 함은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신기술, 특허 및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신기술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신설> (2) 투자실적 (가) “기술개발투자실적”이라 함은 당해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상에 정보통신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정보통신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정보통신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나)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통신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3) 교육실적 정보통신감리원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인정한다. <신설> (4) 첨부서류 (가)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교육실적 (양식8) (나) 재정상태 검토 보고서 (양식9) (다) 신기술지정증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증(등록원부도 포함) 사본 (특허청 발급 최초출원인 확인서류 및 정보통신기술 사용확인 증명서류 제출) <신설> 5. 업무중첩도 (1) 상주 및 기술지원감리원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과업내용서상 감리원의 최초 투입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타용역과의 중복되는 정도(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신설> (가) 당해 용역 배치를 제외하고 산정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개발실적”이라 함은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신기술, 특허 및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신기술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나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특허등록원부의 특허료란에 기재된 유지기간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해야하며, 최초출원자가 감리업체와 현 대표자로 구성된 경우는 1인으로 간주한다. (2) 기술개발투자실적 (가) “기술개발투자실적”이라 함은 해당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상에 정보통신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정보통신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정보통신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나)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통신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3) 교육실적 정보통신감리원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인정한다. <table><tr><th>구분</th><th>교육기관</th><th>제출서류</th></tr><tr><td>정보통신감리원</td><td>한국ICT폴리텍대학, 주식회사케이티(소속직원에 대한 감리원 인정교육에 한함)</td><td>수료증, 각 교육기관발급 교육이수확인서</td></tr></table> (4) 첨부서류 (가)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교육실적(별지 제8호서식) (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9호서식) (다) 신기술지정증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증(등록원부도 포함) 사본 (특허청 발급 최초출원인 확인서류 및 정보통신기술 사용확인 증명서류 제출) (라) 수료증 또는 교육기관발급 교육이수확인서 5. 업무중첩도 (1)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는 과업내용서상 감리원의 최초 투입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참여감리원의 수행 중인 타용역과의 중복되는 정도(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입찰공고 지연 등의 사유로 입찰공고 시 첨부된 과업내용서 상 최초 투입예정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으로 명기된 경우 해당용역의 개찰일을 최초 투입예정일로 본다.) (가) 해당 용역 배치를 제외하고 산정	구분	교육기관	제출서류	정보통신감리원	한국ICT폴리텍대학, 주식회사케이티(소속직원에 대한 감리원 인정교육에 한함)	수료증, 각 교육기관발급 교육이수확인서
구분	교육기관	제출서류					
정보통신감리원	한국ICT폴리텍대학, 주식회사케이티(소속직원에 대한 감리원 인정교육에 한함)	수료증, 각 교육기관발급 교육이수확인서					

현 행	개 정(안)
(나) 상주감리원 1) 타 용역에 상주 또는 비상주 감리원으로 중복 배치되는 경우 당해용역 PQ평가에서 제외 2) 당해용역 배치예정일 이전에 기존 용역의 배치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발주청(또는 감리원 지정권자)의 증빙서류 첨부시 중복배치로 보지 아니한다. 3) 기술지원 감리원 가) 타 용역에 상주감리원으로 중복 배치되는 경우 당해용역 PQ평가에서 제외 나) 타 용역에 기술지원 감리원 또는 전기 비상주감리원 및 일반소방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에는 업무중첩도로 평가 다) 입찰공고일 이전에 용역이 완료되었더라도 감리경력증명서상에 현재 진행 중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중복건수로 산정하되, 발주청에서 확인한 용역완료 증빙서를 제출하는 경우 중복건수 산정에서 제외 4) 요양, 입원, 치료 등을 사유로 ‘완료’로 철수된 감리원은 다음과 같이 감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한 경우 사업수행능력(PQ)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가)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 그 감리원을 교제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당해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위 가)항목은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감리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이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타 감리용역에서 철수한 경우 감리원 지정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이 완료되었을 경우 : 용역완료 증빙서류 -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 철수사유가 명기된 확인서류 5) 타 용역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중첩도에 포함 6) 입찰진행중인 2개 이상의 용역에 참여할 때, 상주감리원은 각각 다른 감리원을 배치 <신 설> 나. 첨부서류 (1)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도 (양식 10) (2)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3) 발주청(감리원 지정권자)의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신 설> 6. 교체빈도 (1) 감리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상주감리원 1) 타 용역에 상주 또는 비상주 감리원으로 중복 배치되는 경우 해당용역 PQ평가에서 제외 2) 해당용역 배치예정일 이전에 기존 용역의 배치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발주청(또는 감리원 지정권자)의 증빙서류 첨부시 중복배치로 보지 아니한다. 3) 기술지원 감리원 가) 타 용역에 상주감리원으로 중복 배치되는 경우 해당용역 PQ평가에서 제외 나) 타 용역에 기술지원 감리원 또는 전기 비상주감리원 및 일반소방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에는 업무중첩도로 평가 다) 입찰공고일 이전에 용역이 완료되었더라도 감리경력증명서상에 현재 진행 중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중복건수로 산정하되, 발주청에서 확인한 용역완료 증빙서를 제출하는 경우 중복건수 산정에서 제외 4) <u>해당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이 감리원 경력확인서 상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타 감리용역에서 철수한 경우 철수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u> - 용역이 완료되었을 경우 : 용역완료 증빙서류(계약서, 감리원배치확인서 등) -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 철수사유가 명기된 발주자 확인서류 가)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기존용역에서 철수한 감리원은 철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해당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여 평가받을 수 없다. 다만, 그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공사감리용역이 끝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동> 5) 타 용역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중첩도에 포함 6) 입찰진행중인 2개 이상의 용역에 참여할 때, 상주감리원은 각각 다른 감리원을 배치 7) <u>감리업체 소속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사항에 대하여 다른 감리업체가 열람 및 의의신청할 수 있도록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LH전자조달>심사>심문고)</u> 나. 첨부서류 (1)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도(별지 제10호서식) (2)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3) 발주청(감리원 지정권자)의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4) <u>전기 및 소방 관련 협회 업무중첩도 확인서(해당자에 한함)</u> 6. 교체빈도 (1) 감리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현 행	개 정(안)
○ 교체빈도 : $\frac{\text{최근 1년간 교체건수}}{\text{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times 100$ (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1) + 2) 1) 상주감리원 : 상주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2) 기술지원감리원 : 기술지원감리원의 교체 1건을 0.2건으로 산정하여 합산 (다)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1) + 2) 1) 상주감리원 :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되, 배치된 상주감리원수를 합산 2) 기술지원감리원 : 공사현장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하여 합산 (2) 참여감리원 (가) 참여감리원이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건수 및 완성비율에 따라 평가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에 해당 됨 1)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여 교체된 경우 1회당 0.5점씩 감점 2) 기술지원감리원으로 배치하여 교체된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다) 군 입대, 4주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부도·폐업으로 인한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교체요청, 양도·양수 또는 법인합병으로 인한 퇴직, 2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되어 발주청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음. (3) 감리업체와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는 실적자료 확인이 가능한 관련수탁기관의 자료만 평가하며 관련수탁기관의 자료가 없는 경우 교체빈도를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4) 첨부서류 (가) 교체빈도 (양식11) (나) 관련수탁기관 발행 교체빈도 확인서	○ 교체빈도 : $\frac{\text{최근 1년간 교체건수}}{\text{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times 100$ (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1) + 2) 1) 상주감리원 : 상주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2) 기술지원감리원 : 기술지원감리원의 교체 1건을 0.2건으로 산정하여 합산 (다)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1) + 2) 1) 상주감리원 :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되, 배치된 상주감리원수를 합산 2) 기술지원감리원 : 공사현장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하여 합산 (2) 참여감리원 (가) 참여감리원이 감리용역에서의 교체건수 및 완성비율에 따라 평가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에 해당 됨 1)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여 교체된 경우 1회당 0.5점씩 감점 2) 기술지원감리원으로 배치하여 교체된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다) 군 입대, 4주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부도·폐업으로 인한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교체요청, 양도·양수 또는 법인합병으로 인한 퇴직, 2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되어 발주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음. (3) 감리업체와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는 실적자료 확인이 가능한 관련수탁기관의 자료만 평가하며 관련수탁기관의 자료가 없는 경우 교체빈도를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3) 첨부서류 (가) 교체빈도(별지 제11호서식) (나) 관련수탁기관 발행 교체빈도 확인서
7. 작업계획 및 기법 (1) 평가방법 당해용역의 과업내용서 등에 의하여 감리업체에서 당해 공사에 적합하도록 작성한 계획서를 절대평가 방법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의 규모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상대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편철 (나) 3단계 구분평가 기준 1) 정상작성 및 제출 : 5개 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고 작성분량(15Page) 준수 2) 작성항목누락 또는 작성분량 위반 : 항목이 누락되거나 작성분량이 미달 혹은 초과 3) 미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작업계획 및 기법” 항목이 누락된 경우	7. 작업계획 및 기법 (1) 평가방법 해당용역의 입찰공고문, 과업내용서 등에 의하여 감리업체에서 해당 공사에 적합하도록 작성한 감리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상대평가로 시행할 수 있다. 이 때 발주의뢰부서는 입찰공고 시 해당 평가방법을 공지하여야 한다. (가) 절대평가로 시행할 경우,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편철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2) 평가 기준 - 정상작성 및 제출(5점) : ‘(2)감리계획서 작성내용’에 관하여 ‘(3)작성방법’의 분량을 준수하여 작성·제출 - 작성분량 위반(3점) : 작성분량 미준수 - 미제출(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작업계획 및 기법” 항목이 누락된 경우

현 행	개 정(안)
<신 설> <신 설> (2) 작성항목 (가) 공사관리계획(시공·품질·공정·안전 구분 작성) (나) 감리용역시행시 예상문제점 및 대책 (다) 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본사의 업무지원 체계 (라) 감리원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 감리원의 현장운영방안 (3) 작성방법 (가) 5개 작성항목 모두 작성(동일한 제목으로 작성) (나) 15 Page 범위로 작성(표지 및 목차 제외) <신 설> 8. 가감점 (1) 기술자격 책임감리원이 기술사인 경우에는 1점, 기능장인 경우에는 0.8점, 기사인 경우에는 0.7점, 산업기사인 경우에는 0.5점을 각각 가점한다. 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직문분야 분류상 “정보통신” 분야에 한함. <신 설> (2) 입찰에 불참한 자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붙임1] IV. 평가 관련 유의사항 1. 2.의 경우) 없이 입찰에 불참한 경우 입찰불참 통보 문서시행일로부터 1년간 당해용역과 동일한 용역에 입찰참여시 감점 적용 (가) 1회 불참한 자 : 0.5점 감점 (나) 2회이상 불참한 자 : 1.0점 감점 <신 설> <신 설>	※ 해당용역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0점 처리함. (나) 상대평가로 시행할 경우,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분리하여 별도 편철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2) 위원별 상대평가 시행 등급별 업체수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된다. 다만, 해당평가서류가 미제출된 경우,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하고 등급별 업체수 배분에서 제외한다. - 등급별 업체수 배분표 : 「기술용역 등 제안서 평가 운영지침」 별표5 준용 (다) 평가위원회의 운영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기술용역 등 제안서 평가 운영지침」에 따르며, 평가계획 수립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평가방법을 조정 할 수 있다. (2) <u>감리계획서 작성내용</u> (가) <u>공사관리계획</u> * 감리원 배치계획과 연계하여 시공·품질·공정·안전관리계획을 포함 (나) 감리용역시행시 예상문제점 및 대책 (다) 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본사의 업무지원 체계 (라) 감리원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 감리원의 현장운영방안 (3) 작성방법 (가) ‘(2) 감리계획서 작성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작성 (나) 15 Page로 작성(표지(별지 제3호 서식) 및 목차, 간지 인쇄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 산정에서 제외) (다) 제출 시 각 페이지에 쪽수를 표기하여 제출 8. 가·감점 (1) 기술자격 책임감리원이 기술사인 경우에는 1점, 기능장인 경우에는 0.8점, 기사인 경우에는 0.7점, 산업기사인 경우에는 0.5점을 각각 가점한다. 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직문분야 분류상 “정보통신” 분야에 한함. (2) <u>부패행위관련자</u> <u>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행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감리원 경력확인서 상의 제재내역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 사실에 대해 평가기준에 따라 감점을 적용한다.</u> (3) <u>입찰불참</u>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붙임1] IV. 평가 관련 유의사항 1. 2.의 경우) 없이 입찰에 불참한 경우 입찰불참 통보 문서시행일로부터 1년간 <u>해당</u>용역과 동일한 용역에 입찰참여시 감점 적용 (가) 1회 불참한 자 : 0.5점 감점 (나) 2회이상 불참한 자 : 1.0점 감점 (다) 입찰불참을 평가할 경우 입찰공고문에 별도로 명시한다.

현 행	개 정(안)
(3) 첨부서류 (가) 가점 및 감점 (양식 12) (나) 관련 협회 증빙자료, 입찰 불참 관련문서, LH에서 발급한 품질우수(미흡)통지서 사본 IV. 평가 관련 유의사항 1. <u>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제출일 현재</u> 참여감리원 중 상주감리원이 타 용역에 상주, 기술지원감리원으로 배치되는 경우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한다. 단, 타 용역의 배치계획상 본용역 기간내 배치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해당 발주청의 확인서(배치계획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업무중첩도 건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2이상의 입찰이 동시에 진행(타발주청 포함)되는 경우 낙찰자 결정은 개찰순서에 의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 중 1항의 경우에 해당하면서 중복하여 낙찰예정자로 되는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감리원이 퇴사, 사고 등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용역 착수이전에 공사의 승인을 득하여 동등이상의 감리원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공사의 요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해지) 할 수 있다. 4.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감리원이 과업내용서상의 등급 및 인원을 초과 하는 경우 감리대가는 낙찰자 부담으로 하며, 초과된 인원에 대한 점수는 인정 치 않음 5.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평가배점의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4)품질미흡통지서 LH에서 발급하는 품질 미흡통지서의 유효기간 동안 발급된 누계횟수에 따라 감점을 부여한다. - 1회당 : 1.0점 감점(최대3점) - 유효기간 · 감리업체 : 발급일 기준 1년간 유효(종료일 포함) · 감리원 : 발급일 기준 1년간 유효(종료일 포함) □품질우수통지서 ○ LH 발급횟수에 따라 가점 부여하며, 품질미흡통지서 감점상쇄용으로만 적용 - 유효기간 · 감리업체 : 발급일 기준 1년간 유효(종료일 포함) · 감리원 : 발급일 기준 1년간 유효(종료일 포함) (5) 첨부서류 (가) 가점 및 감점 (별지 제12호 서식) (나) 관련 협회 증빙자료, 입찰 불참 관련문서, LH에서 발급한 품질우수(미흡)통지서 사본 IV. 평가 관련 유의사항 1. <u>해당용역 과업내용서 상 배치착수일*에</u> 참여감리원 중 상주감리원이 타 용역에 상주, 기술지원감리원으로 배치되는 경우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한다. <u>* 입찰공고 지연 등의 사유로 배치착수일이 공고일 이전으로 명기된 경우, 본 입찰공고의 개찰일을 배치착수일로 간주한다.</u> 단, 타 용역의 배치계획상 본용역 기간내 배치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해당 발주청의 확인서(배치계획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업무중첩도 건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u>참여감리원은 2건(타발주청 포함) 이상의 정보통신 감리용역에 중복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최초계약건(낙찰자 선정 포함)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u> - 후행 입찰건이 계약체결 이전일 경우 :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 후행 입찰건이 계약체결 이후일 경우 : 계약취소(해지) 3. <u>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업체의 감리원은 반드시 해당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PQ평가 참여감리원이 퇴사, 사고 등으로 해당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LH의 승인을 받아 당초 참여감리원이 심사 시 취득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감리원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LH의 요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해지)할 수 있다.</u> 4.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감리원이 과업내용서상의 등급 및 인원을 초과 하는 경우 감리대가는 낙찰자 부담으로 하며, 초과된 인원에 대한 점수는 인정 하지 않는다. 5.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평가배점의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현 행	개 정(안)
[붙임 2] 신청서 작성요령 및 양식 I. 신청서 제출서류 1. 제출서류 (1) [붙임1,2]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일체를 제출(모든 증빙서류 포함) ※ 평가서(참여신청서, 위임장포함) (가) 표지: A4 백색아트지(180g) 사용(양식2) (나) 용지: A4 백색용지 사용, 좌편철 무선제본하여 1권으로 제본 <신 설> <신 설> (2) 관련법에 의한 등록증 등 사본은 여백에 대표자의 원본대조 확인 날인 (3) 제본된 평가신청서와 순서 및 내용이 동일한 PDF 파일과 용역업체에서 작성한 자기평가서 EXCEL파일(증빙서류 포함)을 USB 1개에 추가 제출 (4) 책자화하여 제출한 서류와 USB로 제출한 것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책자화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한다. II.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내용이거나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는 실격처리 하고, 자격증·경력·실적 서류에 허위 기재한 경우는 실격, 고발, 행정처분(입찰참가제한 등)함 (단, 점수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는 별도로 보완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제출된 서류로 인하여 평가점수가 바뀔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를 인정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3. 평가서에 첨부되는 각종 증명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1) 감리원 경력증명서, 행정제재여부(부실별점)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현황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원본만을 인정하고, 그 외는 필요시 원본을 징구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동시 다수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제출시 원본(1부)을 포함한 사본 제출 가능 (2) 재정상태보고서는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사본 제출 가능 <신 설> (3) 사본은 대표자의 원본대조필인이 있고,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인 경우만 인정 <신 설> 4.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정보통신 감리용역은 이 기준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며, 사전에 입찰참가자를 선정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감점 포함)를 합산하여 9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함 5.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심사기준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내용서 및 입찰공고내용 등에 반영하여 집행 할 수 있음 6. 감리전문회사는 당해용역 평가에 참여하는 감리원(상주)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2] 신청서 작성요령 I. 신청서 제출서류 1. 제출서류 (1) [별표 1,2]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제본도서 1부(모든 증빙서류 포함) ※ 평가서(참여신청서, 위임장포함) (가) 규격 : A4 용지 (나) 제본 : 좌편철 무선제본 (표지 : 백색아트지) (다) 목차구분이 용이하도록 세부 평가항목별 라벨(label) (라) 해당하는 경력 및 실적에 형광펜으로 표시 (2) 사업수행능력평가 제본도서 스캔본(순서 및 내용이 동일한 PDF파일) 1EA (3) 업체에서 작성(자기평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엑셀파일 1EA <삭 제> II.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내용이거나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는 실격처리 하고, 자격증·경력·실적 서류에 허위 기재한 경우는 실격, 고발, 행정처분(입찰참가제한 등)한다. 2. 점수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는 별도로 보완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제출된 서류로 인하여 평가점수가 바뀔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를 인정하지 않는다. <삭 제> 3. 평가서에 첨부되는 각종 증명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1) 감리원 경력증명서, 행정제재여부(부실별점)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현황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원본만을 인정하고, 그 외는 필요시 원본을 징구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입찰공고일이 동일한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제출시 원본(1부)을 포함한 사본 제출 가능 (2) 재정상태보고서는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사본 제출 가능하며,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와 공인회계사(세무사)의 등록증 사본 1부 함께 제출한다. (3) 사본은 대표자의 원본대조필인이 있는 경우만 인정 (4) 사업수행능력평가 엑셀파일과 별지서식(hwp)이 중복되는 경우 엑셀파일만 제출가능 4.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정보통신 감리용역은 이 기준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며, 사전에 입찰참가자격자를 선정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감점 포함)를 합산하여 9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한다. 5.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심사기준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내용서 및 입찰공고내용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6. 감리업체는 해당용역 평가에 참여하는 감리원 참여동의서(별지 제1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 “양식 2”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표지서식 예시> ○○○지구○○○북아파트○○○엔지니어링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명 : 20 . . 업체명 : ○○엔지니어링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용역명 : 위 용역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정보통신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입찰참가자격 관련서류(감리업등록증 사본 등) 1식. 2. 종합평가표 등 PQ서류 1식. 20 . . 회사명 : 주소 : 대표자 : 작성자 : (인) (인) 휴대전화 : E-Mail :

현 행	개 정(안)
“양식 3” 작업계획 및 기법 (용역명 :) 업 체 명 : _____	<u>[별지 제3호서식]</u> [작업계획 및 기법] 감리계획서 (용역명 :) 업 체 명 : _____

현 행

“양식 4”

자 기 평 가 서									
(당해용역이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요 소		실적	배점	자기 평점	공사 평가	비고	
1. 참여감리원	50	책임 감리원 (성명)	등급		특급	-			
			정보통신경력		년	10			
			감리경력		년	15			
			계		25				
		보조 감리원	등급	감리원1(성명)		-			우리공사 에서 제시한 등급에 해당되는 기준적용 실적개월수 및 년수를 구할 때는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여 명기
				감리원2(성명)					
			정보통신경력	감리원1	년	5	5		
				감리원2	년		5		
			소계1		5	10/2=5			
			감리경력	감리원1	년	10	10		
				감리원2	년		10		
				소계2		10	20/2=10		
			계(소계1+소계2)		15				
		기술지원 감리원 (성명)	등급		고급	2			
			정보통신경력		년	8			
			계		10				
		합 계					50		

개 정(안)

[별지 제4호서식]

종합평가표											
(해당용역이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실적	배점	자기 평점	공사 평가	비고			
1. 참여감리원	50	책임 감리원 (성명)	등급		특급	-					
			경력	정보통신분야		년	10				
				정보통신감리분야		년	15				
			계				25				
		보조 감리원	등급	감리원1(성명)			-			우리공사 에서 제시한 등급에 해당되는 기준적용 실적개월수 및 년수를 구할 때는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명기	
				감리원2(성명)							
			정보통신경력	감리원1		년	5				
				감리원2		년	5				
			소계1				5	10/2=5			
			정보통신 감리경력	감리원1		년	10				
				감리원2		년	10				
				소계2		10	20/2=10				
			계(소계1+소계2)				15				
		기술지원 감리원 (성명)	등급			고급	2				
			정보통신경력			년	8				
			계				10				
		합 계					50				

현행										개정(안)									
자기평가서 (당해용역이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종합평가표 (해당용역이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실적	배점	자기 평점	공사 평가	비고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실적	배점	자기 평점	공사 평가	비고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1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10				
		계			10							계			10				
3. 신용도	10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분포함)	감리업체	월	4					3. 신용도	10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등 (과징금 부과분포함)	감리업체	월	4				
			참여감리원	월	3								참여감리원	월	3				
			소 계		7								소 계		7				
		재정상태 건설도	자본비율		1							재정상태 건설도	자본비율		1				
			유동비율		2								유동비율		2				
			소 계		3								소 계		3				
		계			10							계			1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개발실적	신기술	건 점	4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개발실적	신기술	건 점	4				
			특허	건 점									특허	건 점					
			실용신안	건 점									실용신안	건 점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	4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	4				
		교육실적	40시간이상 이수	점	2							교육실적	40시간이상 이수	점	2				
			20시간이상 이수	점									20시간이상 이수	점					
		계			10							계			10				
5. 업무중절도	10	상주감리원	책임감리원	개 현장	4					5. 업무중절도	10	상주감리원	책임감리원	개 현장	4				
			보조감리원	개 현장	2								보조감리원	개 현장	2				
			소 계		6								소 계		6				
		기술지원감리원	정보통신	개 현장	4							기술지원감리원	정보통신	개 현장	4				
		계			10							계			10				
6. 교체빈도	5	감리업체		%	2.5					6. 교체빈도	5	감리업체		%	2.5				
		참여감리원		건	2.5							참여감리원		건	2.5				
		계			5							계			5				

현 행								개 정(안)							
자 기 평 가 서 (당해용역이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중 합 평 가 표 (해당용역이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요 소	실적	배점	자기 평점	공사 평가	비고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요 소	실적	배점	자기 평점	공사 평가	비고
7. 작업계획 및 기법	5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		5			절대평가	7. 작업계획 및 기법	5	감리계획서		5			절대평가
		계		5						계		5			
8. 가점	1.9	책임감리원 기술자격	기술사 : 1점 기능장 : 0.8점 기사 : 0.7점 산업기사 : 0.5점	1				8. 가점	1	책임감리원 기술자격	<삭 제>	1			
		품질우수통지서 발급횟수		0.9											
		계		1.9											
9. 감점	-6.9	부패행위 관련자		-5				9. 감점	-9	부패행위 관련자		-5			
		입찰에 불참한 자		-1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횟수		-0.9											
		계		-6.9											
총 합 계								총 합 계							
상기 자기평가서는 공사의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 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 되었고, 참여시 제출한 자기평가서와 참여감리원 평가·배치계획표는 교체 불가능함을 확인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하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상기 종합평가표는 LH의 입찰공고문 및 「공동주택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 능력 평가지침」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 후 적합하게 작성·제출 되었고, 참여시 제출한 종합평가표와 참여감리원 평가·배치계획표는 교체 불가능함을 확인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하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현 행												개 정(안)																																																																																																																																									
“양식 5” 참여감리원 평가·배치계획표 (당해용역이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분야</th> <th rowspan="2">직책</th> <th rowspan="2">LH의 요구 등급</th> <th rowspan="2">PQ 참여 등급</th> <th rowspan="2">이름</th> <th rowspan="2">주민 등록 번호</th> <th rowspan="2">해당분야 경력기간 (년)</th> <th colspan="3">감리분야경력(개월)</th> <th rowspan="2">소속 회사</th> <th rowspan="2">배치 예정일</th> </tr> <tr> <th>100% 경력</th> <th>60% 경력</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정보 통신</td> <td>책임 감리원</td> <td></td> <td></td> <td>○○○</td> <td>720210-000000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보 통신</td> <td>보조 감리원</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보 통신</td> <td>보조 감리원</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보 통신</td> <td>기술지원 감리원</td> <td>고급이상</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 배치예정일은 과업내용서상 명기된 배치예정일을 기입하고 이를 기준으로 감리원 업무중첩도를 확인하며, 입찰 참여시 제출한 참여감리원 평가·배치계획표는 교체가 불가능하므로 정확히 작성 * 붙임: 1.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해당감리원에 형광펜으로 표시) 2. 감리원 경력 확인서												분야	직책	LH의 요구 등급	PQ 참여 등급	이름	주민 등록 번호	해당분야 경력기간 (년)	감리분야경력(개월)			소속 회사	배치 예정일	100% 경력	60% 경력	계	정보 통신	책임 감리원			○○○	720210-0000000							정보 통신	보조 감리원											정보 통신	보조 감리원											정보 통신	기술지원 감리원	고급이상										[별지 제5호서식] 참여감리원 평가·배치계획표 (해당용역이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분야</th> <th rowspan="2">직책</th> <th rowspan="2">LH의 요구 등급</th> <th rowspan="2">PQ 참여 등급</th> <th rowspan="2">이름</th> <th rowspan="2">주민 등록 번호</th> <th rowspan="2">해당분야 경력기간 (년)</th> <th colspan="3">감리분야경력(개월)</th> <th rowspan="2">소속 회사</th> <th rowspan="2">배치 예정일</th> </tr> <tr> <th>100% 경력</th> <th>60% 경력</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정보 통신</td> <td>책임 감리원</td> <td></td> <td></td> <td>○○○</td> <td>720210-000000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보 통신</td> <td>보조 감리원</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보 통신</td> <td>보조 감리원</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보 통신</td> <td>기술지원 감리원</td> <td>고급이상</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 배치예정일은 과업내용서상 명기된 배치예정일을 기입하고 이를 기준으로 감리원 업무중첩도를 확인하며, 입찰 참여시 제출한 참여감리원 평가·배치계획표는 교체가 불가능하므로 정확히 작성 * 붙임: 1.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해당감리원에 형광펜으로 표시) 2. 감리원 경력 확인서												분야	직책	LH의 요구 등급	PQ 참여 등급	이름	주민 등록 번호	해당분야 경력기간 (년)	감리분야경력(개월)			소속 회사	배치 예정일	100% 경력	60% 경력	계	정보 통신	책임 감리원			○○○	720210-0000000							정보 통신	보조 감리원											정보 통신	보조 감리원											정보 통신	기술지원 감리원	고급이상									
분야	직책	LH의 요구 등급	PQ 참여 등급	이름	주민 등록 번호	해당분야 경력기간 (년)	감리분야경력(개월)			소속 회사	배치 예정일																																																																																																																																										
							100% 경력	60% 경력	계																																																																																																																																												
정보 통신	책임 감리원			○○○	720210-0000000																																																																																																																																																
정보 통신	보조 감리원																																																																																																																																																				
정보 통신	보조 감리원																																																																																																																																																				
정보 통신	기술지원 감리원	고급이상																																																																																																																																																			
분야	직책	LH의 요구 등급	PQ 참여 등급	이름	주민 등록 번호	해당분야 경력기간 (년)	감리분야경력(개월)			소속 회사	배치 예정일																																																																																																																																										
							100% 경력	60% 경력	계																																																																																																																																												
정보 통신	책임 감리원			○○○	720210-0000000																																																																																																																																																
정보 통신	보조 감리원																																																																																																																																																				
정보 통신	보조 감리원																																																																																																																																																				
정보 통신	기술지원 감리원	고급이상																																																																																																																																																			
“양식 6-1” (생략)												[별지 제6-1호서식](현행과 같음)																																																																																																																																									

현행

“양식 6-2”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 회사명 :

구분	발주처명	감리용역 사업명	용역기간 (시작: 년월일 종료: 년월일)	감리용역비 (천원)	용역개요 (건축물코드)
완료	유사감리 (주거용 건축물)				
		소계			
	기타감리 (비주거용 건축물)				
		소계			
진행	유사감리 (주거용 건축물)				
		소계			
	기타감리 (비주거용 건축물)				
		소계			
총계	유사감리(주거용 건축물)			12,345 천원	
	기타감리(비주거용 건축물)			3,000 천원	
	계			15,345 천원	
실적인정금액	유사감리(주거용 건축물)[100%인정]			12,345 천원	
	기타감리(비주거용 건축물)[60%인정]			3,000*0.6 = 1,800 천원	
	계			14,145 천원	

※ 1. 진행중인 용역은 입찰공고일 이전까지 기성금액 누계실적으로 산정 (단, 1건 기준 실적 인정금액이 2천2백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인 용역에 한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작성시 “유사감리” “기타감리”의 용역 개요 작성은 용역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코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인정되며, 경력확인기관에서 확인불가능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해당분야 실적 인정

※ 붙임 : 관련 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감리용역 수행실적증명서(양식14)

개정(안)

[별지 제6-2호서식]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 회사명 :

구분	발주처명	감리용역 사업명	용역기간 (시작: 년월일 종료: 년월일)	감리용역비 (천원)	용역개요 (건축물코드)
완료	유사감리 (주거용 건축물)				
		소계			
	기타감리 (비주거용 건축물)				
		소계			
진행	유사감리 (주거용 건축물)				
		소계			
	기타감리 (비주거용 건축물)				
		소계			
총계	유사감리(주거용 건축물)			12,345 천원	
	기타감리(비주거용 건축물)			3,000 천원	
	계			15,345 천원	
실적인정금액	유사감리(주거용 건축물)[100%인정]			12,345 천원	
	기타감리(비주거용 건축물)[60%인정]			3,000*0.6 = 1,800 천원	
	계			14,145 천원	

※ 1. 진행중인 용역은 입찰공고일 기준 기성누계금액이 2.2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인 실적만 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작성시 “유사감리” “기타감리”의 용역 개요 작성은 용역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코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인정되며, 경력확인기관에서 확인불가능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해당분야 실적 인정

※ 붙임 : 관련 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감리용역 수행실적증명서(별지 제14호서식)

- 28 -

현행

개정(안)

“양식 7”

[별지 제7호서식]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기술자격정지 지정기간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지정기간

업체명 및 감리원성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감점
	~				
	~				
	~				
	~				
	~				
	~				
	~				
	~				
	~				
	~				
	~				
	~				
	~				
	~				
계					

※ 관련 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과징금부와 처분을 포함한다.

붙임 : 관련 협회의 제재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행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업체명 및 감리원성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감점
	~				
	~				
	~				
	~				
	~				
	~				
	~				
	~				
	~				
	~				
	~				
	~				
	~				
	~				
	~				
계					

※ 관련 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과징금부와 처분을 포함한다.

붙임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행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행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현행

“양식 8”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교육실적

o 기술개발 실적

구분	업체명	건명	출원일자	유효기간	경과기간	출원인수	점수
신기술	회사명						(2점×가중치)/출원인수
특허	회사명						(1점×가중치)/출원인수
실용신안	회사명		'01.6.18	'11.6.17	1년10월	2	(0.5점×가중치)/출원인수
계							

* 신기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 하여 계산

o 기술개발 투자실적

업체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비고
	기술개발 투자액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액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액	총매출액		
A								
계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정보통신부문의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 계산방법

(1+2+3년차의 기술개발투자액합계/1+2+3년차의 총매출액 합계) * 100 * 참여지분율

o 교육훈련실적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고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기술지원감리원
점수	- 40시간 이상 : (0명/3명)×1.5점=00점 - 20시간~40시간미만: (0명/3명)×0.75=00점 계 : 00점			

“양식 9” (생략)

개정(안)

[별지 제8호서식]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교육실적

o 개발실적

구분	업체명	건명	출원일자	유효기간	경과기간	출원인수	점수
신기술	회사명						(2점×가중치)/출원인수
특허	회사명						(1점×가중치)/출원인수
실용신안	회사명		'01.6.18	'11.6.17	1년10월	2	(0.5점×가중치)/출원인수
계							

* 신기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 하여 계산

o 기술개발 투자실적

업체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비고
	기술개발 투자액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액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액	총매출액		
A								
계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정보통신부문의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 계산방법

(1+2+3년차의 기술개발투자액합계/1+2+3년차의 총매출액 합계) * 100 * 참여지분율

o 교육실적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고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기술지원감리원
점수	- 40시간 이상 : (0명/3명)×1.5점=00점 - 20시간~40시간미만: (0명/3명)×0.75=00점 계 : 00점			

[별지 제9호서식](현행과 같음)

- 30 -

현 행				개 정(안)																																																																																															
“양식 11” 교 체 빈 도 ☐ 감리전문회사(2.5점)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회사명</th> <th colspan="2">점 수 계 산</th> </tr> <tr> <th>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로 산정한 교체율</th> <th>점 수</th> </tr> </thead> <tbody> <tr> <td>회사명(A)</td> <td>00.00%</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계</td> <td></td> <td></td> </tr> </tbody> </table> ☐ 참여감리원(2.5점)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 분 (성 명)</th> <th>최근1년간 감리현장에서 교체한 현장명</th> <th>점 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책임</td> <td></td> <td></td> <td>-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td> <td></td> </tr> <tr> <td rowspan="4">상주 감리원</td> <td></td> <td></td> <td>-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td> <td></td> </tr> <tr> <td></td> <td></td> <td>-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td> <td></td> </tr> <tr> <td></td> <td></td> <td>-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td> <td></td> </tr> <tr> <td></td> <td></td> <td>-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td> <td></td> </tr> <tr> <td colspan="3">계</td> <td></td> <td></td> </tr> </tbody> </table> ※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 평가는 각 관련수탁기관에서 실적자료 확인이 가능한 자료로 평가				회사명	점 수 계 산		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로 산정한 교체율	점 수	회사명(A)	00.00%					계			구 분 (성 명)		최근1년간 감리현장에서 교체한 현장명	점 수	비고	책임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상주 감리원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계					[별지 제11호서식] 교 체 빈 도 ☐ 감리업체(2.5점)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회사명</th> <th colspan="2">점 수 계 산</th> </tr> <tr> <th>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로 산정한 교체율</th> <th>점 수</th> </tr> </thead> <tbody> <tr> <td>회사명(A)</td> <td>00.00%</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계</td> <td></td> <td></td> </tr> </tbody> </table> ☐ 참여감리원(2.5점)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 분 (성 명)</th> <th>최근1년간 감리현장에서 교체한 현장명</th> <th>점 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책임</td> <td></td> <td></td> <td>-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td> <td></td> </tr> <tr> <td rowspan="4">상주 감리원</td> <td></td> <td></td> <td>-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td> <td></td> </tr> <tr> <td></td> <td></td> <td>-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td> <td></td> </tr> <tr> <td></td> <td></td> <td>-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td> <td></td> </tr> <tr> <td></td> <td></td> <td>-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td> <td></td> </tr> <tr> <td colspan="3">계</td> <td></td> <td></td> </tr> </tbody> </table> ※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 평가는 각 관련수탁기관에서 실적자료 확인이 가능한 자료로 평가				회사명	점 수 계 산		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로 산정한 교체율	점 수	회사명(A)	00.00%					계			구 분 (성 명)		최근1년간 감리현장에서 교체한 현장명	점 수	비고	책임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상주 감리원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계				
회사명	점 수 계 산																																																																																																		
	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로 산정한 교체율	점 수																																																																																																	
회사명(A)	00.00%																																																																																																		
계																																																																																																			
구 분 (성 명)		최근1년간 감리현장에서 교체한 현장명	점 수	비고																																																																																															
책임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상주 감리원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계																																																																																																			
회사명	점 수 계 산																																																																																																		
	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로 산정한 교체율	점 수																																																																																																	
회사명(A)	00.00%																																																																																																		
계																																																																																																			
구 분 (성 명)		최근1년간 감리현장에서 교체한 현장명	점 수	비고																																																																																															
책임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상주 감리원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계																																																																																																			

현행	개정(안)																																																																																						
“양식 12” 가점 및 감점 ☐ 기술자격자 <table><thead><tr><th>감리업체명</th><th>성명</th><th>자격종목</th><th>가점</th><th>비고</th></tr></thead><tbody><tr><td></td><td></td><td></td><td></td><td></td></tr></tbody></table> *첨부: 관련 자격증 사본 ☐ 품질우수통지서 발급횟수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감점 상쇄용도로만 적용) <table><thead><tr><th colspan="2">구분</th><th>최근 1년간 품질우수통지서 발급횟수</th><th>점수</th></tr></thead><tbody><tr><td>업체명</td><td></td><td></td><td></td></tr><tr><td>참여기술자명</td><td></td><td></td><td></td></tr><tr><td colspan="3">합계</td><td></td></tr></tbody></table> *첨부: LH에서 발급한 품질우수통지서 사본 ☐ 부패행위 관련자 <table><thead><tr><th>참여감리원</th><th>참여업체</th><th>감점 점수</th><th>비고</th></tr></thead><tbody><tr><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r><tr><td colspan="2">계</td><td></td><td></td></tr></tbody></table> *첨부: 관련문서 등 증빙자료 ☐ 입찰에 불참한 자 <table><thead><tr><th>입찰불참 업체명</th><th>감점 점수</th><th>비고</th></tr></thead><tbody><tr><td></td><td></td><td></td></tr><tr><td>계</td><td></td><td></td></tr></tbody></table> *입찰불참 관련문서 첨부	감리업체명	성명	자격종목	가점	비고						구분		최근 1년간 품질우수통지서 발급횟수	점수	업체명				참여기술자명				합계				참여감리원	참여업체	감점 점수	비고									계				입찰불참 업체명	감점 점수	비고				계			[별지 제12호서식] 가점 및 감점 ☐ 기술자격 <table><thead><tr><th>감리업체명</th><th>성명</th><th>자격종목</th><th>가점</th><th>비고</th></tr></thead><tbody><tr><td></td><td></td><td></td><td></td><td></td></tr></tbody></table> *첨부: 관련 자격증 사본 <삭제> ☐ 부패행위 관련자 <table><thead><tr><th>참여감리원</th><th>참여업체</th><th>감점 점수</th><th>비고</th></tr></thead><tbody><tr><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r><tr><td colspan="2">계</td><td></td><td></td></tr></tbody></table> *첨부: 관련문서 등 증빙자료 ☐ 입찰불참 <table><thead><tr><th>입찰불참 업체명</th><th>감점 점수</th><th>비고</th></tr></thead><tbody><tr><td></td><td></td><td></td></tr><tr><td>계</td><td></td><td></td></tr></tbody></table> *입찰불참 관련문서 첨부	감리업체명	성명	자격종목	가점	비고						참여감리원	참여업체	감점 점수	비고									계				입찰불참 업체명	감점 점수	비고				계		
감리업체명	성명	자격종목	가점	비고																																																																																			
구분		최근 1년간 품질우수통지서 발급횟수	점수																																																																																				
업체명																																																																																							
참여기술자명																																																																																							
합계																																																																																							
참여감리원	참여업체	감점 점수	비고																																																																																				
계																																																																																							
입찰불참 업체명	감점 점수	비고																																																																																					
계																																																																																							
감리업체명	성명	자격종목	가점	비고																																																																																			
참여감리원	참여업체	감점 점수	비고																																																																																				
계																																																																																							
입찰불참 업체명	감점 점수	비고																																																																																					
계																																																																																							

현 행				개 정(안)			
☐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횟수				☐ 품질미흡·우수통지서			
구 분		최근 1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횟수	점 수	구 분		최근 1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횟수	평점 평가
업체명				업체명			
참여기술자명				참여기술자명			
합 계				소 계			
구 분				구 분		최근 1년간 품질우수통지서 발급횟수	평점 평가
업체명				업체명			
참여기술자명				참여기술자명			
합 계				소 계			
				계			
*첨 부 : LH에서 발급한 품질미흡통지서 사본				*첨 부 : LH에서 발급한 품질미흡·우수통지서 사본			

현행	개정(안)																																					
“양식 13-1” 상주감리원 각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상기 정보통신공사 상주 감리원인 ○○○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지구 ○○블록 아파트 정보통신공사 ○공구 감리용역 입찰공고일 현재 타용역에 상주, 비상주 감리원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감리자 지정이후 타용역 참여사실이 확인 될 경우 감리자 지정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20 . . . 주소 : 업체명 : (주) ○○○○ 엔지니어링 대표자 : ○ ○ ○ (인)	[별지 제13호서식] 감리원 참여동의서 LH「00 공동주택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에 감리원으로 참여함을 동의하며, 해당 용역 배치예정일 기준으로 상주감리원은 타 현장 상주·비상주감리원으로, 비상주감리원은 타 현장 상주·일반감리원으로 중복하여 참여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만약 타 용역 참여사실이 확인될 경우 낙찰자 선정 제외나 계약 취소(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참여동의자 <table><thead><tr><th colspan="2">구분</th><th>성명</th><th>생년월일</th><th>관련협회 회원번호</th><th>해당용역 배치예정일</th><th>서명</th><th>비고</th></tr></thead><tbody><tr><td rowspan="3">상주</td><td>책임 감리원</td><td>최00</td><td>00.00.00</td><td></td><td>2025.12.31</td><td></td><td>2개월 착공지연</td></tr><tr><td rowspan="2">보조 감리원</td><td>김00</td><td>00.00.00</td><td></td><td>2025.12.31</td><td></td><td>용역종료</td></tr><tr><td>박00</td><td>00.00.00</td><td></td><td></td><td></td><td>해당없음</td></tr><tr><td>비상주</td><td>기술지원 감리원</td><td>이00</td><td>00.00.00</td><td></td><td>2026.01.20</td><td></td><td>퇴사</td></tr></tbody></table> 20 . . . 업체명 : (주) ○○○○ 엔지니어링 대표자 : ○ ○ ○ (인)	구분		성명	생년월일	관련협회 회원번호	해당용역 배치예정일	서명	비고	상주	책임 감리원	최00	00.00.00		2025.12.31		2개월 착공지연	보조 감리원	김00	00.00.00		2025.12.31		용역종료	박00	00.00.00				해당없음	비상주	기술지원 감리원	이00	00.00.00		2026.01.20		퇴사
구분		성명	생년월일	관련협회 회원번호	해당용역 배치예정일	서명	비고																															
상주	책임 감리원	최00	00.00.00		2025.12.31		2개월 착공지연																															
	보조 감리원	김00	00.00.00		2025.12.31		용역종료																															
		박00	00.00.00				해당없음																															
비상주	기술지원 감리원	이00	00.00.00		2026.01.20		퇴사																															

현 행	개 정(안)
“양식 13-2” 기술지원감리원 각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상기 정보통신공사 기술지원감리원인 ○○○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지구 ○○블록 아파트 정보통신공사 ○공구 감리용역 입찰공고일 현재 타용역에 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감리자 지정이후 타용역 참여사실이 확인 될 경우 감리자 지정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20 . . . 주 소 : 업 체 명 : (주) ○○○○ 엔지니어링 대 표 자 : ○ ○ ○ (인) “양식 14” (앞쪽 생략)	<삭 제> [별지 제14호서식](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뒤쪽) ■ 작성요령 1. “발주자”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원 발주자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용역수행사실내용”은 다음 각목과 같이 기재합니다. 가. “①구분”은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형태를 선택하여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②용역명”은 해당 공사감리용역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③현장주소”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공사현장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라. “④용역개요”는 해당 공사감리용역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18호서식 (3)세부공종별(종합) 부호코드에 따른 건축물 시설명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마. “⑤계약내용”은 해당 공사감리용역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바. “⑥계약이행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1) 기성분 : 기성분을 합산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잔여분 : 기성분을 제외한 계약잔여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총괄 : 기성분과 계약잔여분 모두를 합산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 “⑦참여감리원”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1) 직무 :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기술지원감리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등급 : 배치 감리원을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구분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3) 감리배치기간(일수) : 완료된 공사감리용역일 경우에는 배치감리원의 감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전체기간 및 실제 배치일수를 기재하고, 진행중인 용역일 경우에는 배치계획서상의 배치기간과 배치일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사항 가. 전기·소방 등 타 분야 공사감리용역과 통합발주의 경우에는 타분야 용역을 제외한 정보통신 감리용역 등 당해용역에 해당하는 금액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지분금액 및 비율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감리업체(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감리업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회사와 신규 회사로 구분하여 해당업체가 수행한 감리기간, 감리금액, 감리이행비용 등을 각각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뒤쪽) ■ 작성요령 1. “발주자”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원 발주자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용역수행사실내용”은 다음 각목과 같이 기재합니다. 가. “①구분”은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형태를 선택하여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②용역명”은 해당 공사감리용역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③현장주소”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공사현장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라. “④용역개요”는 해당 공사감리용역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18호서식 (3)세부공종별(종합) 부호코드에 따른 건축물 시설명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마. “⑤계약내용”은 해당 공사감리용역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바. “⑥계약이행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1) 기성분 : 기성분을 합산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잔여분 : 기성분을 제외한 계약잔여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총괄 : 기성분과 계약잔여분 모두를 합산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 “⑦참여감리원”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1) 직무 :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기술지원감리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등급 : 배치 감리원을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구분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3) 감리배치기간(일수) : 완료된 공사감리용역일 경우에는 배치감리원의 감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전체기간 및 실제 배치일수를 기재하고, 진행중인 용역일 경우에는 배치계획서상의 배치기간과 배치일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사항 가. 전기·소방 등 타 분야 공사감리용역과 통합발주의 경우에는 타분야 용역을 제외한 정보통신 감리용역 등 해당용역에 해당하는 금액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지분금액 및 비율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감리업체(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감리업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회사와 신규 회사로 구분하여 해당업체가 수행한 감리기간, 감리금액, 감리이행비용 등을 각각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자구 수정